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고 응 중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건설과장)	일 자	질의 : 2005년 9월 22일 답변 : 2005년 9월 22일
회 의	제12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예결특위		

【질의요지】

- 평창읍 대상리 안정마을 지구내 개발행위협약에 따른 하천법 검토 협의내용

【답변요지】

- 2003. 2. 1 ~ 2005. 9월 개발행위허가대장(대상리 안정마을)

위 치			신 청 자		용도 지역	허 가 내 용				허가일	준공일	협약 여부	비고
읍면	리	지번	주소	성명		지정 면적	지목	허가 면적	개발행위 목 적				
평창읍	대상리	221-1	평창읍 도촌리	배순배	관리	1,539	전	660	단독 주택	'03. 8. 2	'04. 11. 11	미협약	
평창읍	대상리	221	평창읍 대상리	이세근	관리	1,152	전	330	단독 주택	'03. 8. 2	'04. 9. 3	미협약	
평창읍	대상리	167-2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759	정해준	관리	2,265	전	910	단독 주택	'04. 6. 19		협의	공유 수면

- 개발행위협약시 하천법 검토 협의내용

-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
 편입여부

붙임 : 협의서류(사본) 1부. 끝.

⇒ 단독주택신축부지

- 민원인 : 배 순 례 ○ 주소 :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산37번지
- 접수일 : '03. 6.14 ○ 심의일 : '03. 6.16 ○ 처리기한 : '03. 7.

『민원1회방문처리규정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함.

심 의 사 항

관련법규	검토 부서	검 토 내 용	결과		검토자	
			가	부	직	성명
농지법	농업경영과	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이용협의제안임	○		농업팀	김승권
건축법	지역도시과	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^{작성신고} 건축 을 ^{작성} 허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(건축법 제104조의2 제1항 단서 적용)	○		건축팀	김영진
수도법	지역도시과	개업신청 있음	○		개업팀	김이은
오수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	환경복지과	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전 타처리시설 설치신고후 준공사실을 받아야 함.	○		환경팀	김명희
도로법	건설과	기록사항 없음	○		기술팀	이/603
지하수법	건설과	언허가로 득관독 허용되니 비합법	○		"	"

신청인	성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배 순 례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580108
	주소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토리 산 37번지 (☎:011-669-6866)		

허 가 신청 사항


위치 (지번)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221-1번지		지 목	전
용도지역	관리지역		용도지구	
공작물 설치	신청면적		중 량	
	공작물구조		부 피	
토지형질변경	토지현황	경사도	0°	토 질
		토석매장량		
	입목식재현황	주요수종		
		입 목 지		무 입 목 지
신청면적	660 m'			
입목별채	수 종		나 무 수	그루
	신청면적	m'		부 피
토석채취	중 전 면적		분 할 면적	
물건적치	중 량		부 피	
	품 명		평균 적치량	
	적치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개월간)		

개발행위목적: 단독(일반)주택 부지 조성

사업기간: 착 공 2003년 6월 일 준 공 2004년 5월 30일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
신청인: 과장 *KAKAK*
 신청인: *배순례*
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 귀하

2003년 6월 '일
 신청인 배 순 례 (서명  인)

※ 구비서류: 뒤쪽 참조

수수료

없 음

원본대조필 

○ 조례 제 21 호 평창읍 평창읍 대상리 221번지(관리지역)

⇒ 단독주택신축부지

○ 민원인 : 이 세 근 ○ 주소 :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180-2번지

○ 접수일 : '03. 6.14 ○ 심의일 : '03. 6.16 ○ 처리기한 : '03. 7.

『민원1회방문처리규정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함.

심 의 사 항

관련법규	검토 부서	검 토 내 용	결과		검토자	
			가	부	직	성명
농지법	농업 경영과	평창읍 362리 수리마을의 농지전용범위 대상일	○		농업팀	김현철
건축법	지역 도시과	농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행위 시행하시 바랍니다 (건축법 제 30m 이내의 경우 건축신고에 해당)	○		건축팀	김영찬
수도법	지역 도시과	제정사항 없음	○		행정팀	김기문
오수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	환경 복지과	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질 다중처리시설 설치신고후 공급사를 받아야 함.	○		환경팀	조영희
도로법	건설과	지중수행 없음	○		기/노공	이/683
지하수법	건설과	안개막 등장류 허용하시 바랍니다	○		"	"

원본에 조필

신청인	성명 (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이 세 근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470914
	주소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180-2번지 (☎:011-369-6099)		

허가 신청 사항

위치 (지번)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221번지		지 목	전
용도지역	관리지역		용도지구	
공작물 설치	신청면적		중 량	
	공작물구조		부 피	
토지형질변경	토지현황	경사도	0°	토 질
		토석매장량		
	입목식재현황	주요수종		
		입 목 지		무 입 목 지
	신청면적	330 m ²		
	입목벌채	수 종		나 무 수
			그루	
토석채취	신청면적	m ²	부 피	
토지분할	중전면적		분할면적	
물건적치	중 량		부 피	
	품 명		평균 적치량	
	적치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개월간)		

개발행위목적: 단독(일반)주택 부지 조성

사업기간: 착 공 2003년 6월 일 준 공 2004년 5월 30일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

2003년 6월 일

신청인 이 세 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 귀하

※ 구비서류: 뒤쪽 참조

수수료

없 음

강원도 평창군
본대주필

94

- 민원명 : 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허가
 - 신청지 :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167-2번지(관리지역)
 - 목 적 : 단독(민박)주택 신축
 - 신청인 : 정 해 준 ○ 주소 : 경기 용인시 상현동 759 롯데@104-801호
 - 접수일 : '04. 5. 24. ○ 심의일 : '04. 5. 25. ○ 처리기한 : '04. 6.12 .
- 『민원1회방문처리규정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함.

심 의 사 항

관련법규	검토 부서	검 토 의 견	결과		검 토 자	
			가	부	직	성 명
농 지 법	농 업 경영과	평창지공소의 유입에 의거 하천통합의 대상임.	-		농업기술	김원철
건 축 법	지 역 도시과	평창지공소의 유입에 의거 건축신규 제출후 4년426일 이전	.		주방건축	신승호
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	환 경 복지과	관련 제92 조항에 대한 사전 의제처리실 선의신규로 준공시를 득하여야 함.	.		환경기	김영희
환경정책 기본법	환 경 복지과					
문 화 재 보호 법	문 화 관광과	해당지역은 문화유산 제143호 1구역에 의거 문화재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이므로 문화재청에 대한 유감의 통보가 필요함			문화유산	김남호
하 천 법	건설과	저류수상임	.		토목9	홍영근
공유수면 관리법	건설과	공유수면 관련법 제50 조항의 적용이유에 의거 적용됨	.		-	홍영근
도 로 법	건설과	저류수상 있음	.		기능9	이/63
지하수법	건설과	지하수법의 관련규정이 9기 9. 허가 대상인	.		토목9	곽경호

원본대조필

신청인		성명	정 해 준	주민등록번호	531023		
		주소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759 롯데@ 104-801 ☎ 018 - 273 - 9355				
허 가 신 청 사 항							
위	치(지 번)	평창읍 대상리 167-2번지		지 목	전		
용	도 지 역	관 리 지 역		용도지구			
신청 내 용	공작물 설 치	신청면적			종 량		
		공작물 구 조			부 피		
	형 질 변 경	토지현황	경 사 도	평탄지	토 질		
			토석매장량				
		입목식재 현 황	주 요 수 종				
			입 목 지		무입목지		
		신청면적	910㎡				
		입목벌채	수 종		나 무 수		
	토 석 취	신청면적			부 피		
	토 지 분 할	종전면적			분할면적		
	물건적치	종 량			부 피		
		품 명			평균적치량		
적치기간	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(개월간)			
개발행위(변경)목적		단독주택(민박) 부지조성					
사업기간	착 공	2004년 05 월 일	준 공	2005년 05월 31일			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.							
2004. 5. 21		2004년 05월 일		정 해 준			
지역대표		평창군수 귀하.		평창군수 귀하.			

원본대초필